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2015. 12. .

제안자 : 복지도시위원장

1. 수정이유

춤 허용업소의 지정신청 시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에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가. “춤 허용업소의 신청하는” 을 “춤 허용업소 지정을 받은” 으로, “소음 등으로 인한 주변 주민들에게” 를 “주변 주민들에게 소음 등으로 인한” 으로 함.
(안 제4조)

나. 제목 “(춤 허용업소의 신청)” 을 “(춤 허용업소의 지정신청)” 으로 하고, “춤 허용업소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을 “춤 허용업소 지정(변경)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으로 하며,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을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원본) 1부” 로 하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를 신설함.(안 제5조)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에서 정한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서 정한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으로 함.(안 제7조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 중 “춤 허용업소의 신청하는” 을 “춤 허용업소 지정을 받은” 으로, “소음 등으로 인한 주변 주민들에게” 를 “주변 주민들에게 소음 등으로 인한” 으로 한다.

안 제5조의 제목 “(춤 허용업소의 신청)” 을 “(춤 허용업소의 지정신청)” 으로 하고, 제5조제1항제1호 중 “춤 허용업소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을 “춤 허용업소 지정(변경)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으로 하며, 제5조제1항제2호 중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을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원본) 1부” 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안 제7조제1항제3호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에서 정한 생활소음규제기준” 을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서 정한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으로 한다.

안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4조(츄 허용업소 영업자의 의무) 제5조에 따라 <u>츄 허용업소의 신청하는 일반음식점의 영업자(이하 "영업자"라 한다)는 소음 등으로 인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u></p> <p>제5조(츄 허용업소의 신청) ① <u>영업자가 츄 허용업소의 지정을 신청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츄 허용업소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u> 2. <u>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u> 3. (생략) <p><u><신 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생략) 5. (생략) ② (생략) 	<p>제4조(츄 허용업소 영업자의 의무) -----<u>츄 허용업소 지정을 받은 ----- 주변 주민들에게 소음 등으로 인한 -----</u></p> <p>제5조(츄 허용업소의 지정신청) ①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츄 허용업소 지정(변경)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u> 2. <u>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원본) 1부</u> 3. (원안과 같음) 4.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u>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u> 5. (원안 제4호와 같음) 6. (원안 제5호와 같음) ② (원안과 같음)

제7조(축 허용업소의 안전기준 등) ① 축 허용업소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2. (생략)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방안전점검을 분기별 1회 이상 받은 후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4.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소음진동규제법」에서 정한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준수할 것

5. ~ 11. (생략)

제7조(축 허용업소의 안전기준 등) ① -----

1.·2. (원안과 같음)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4.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서 정한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5. ~ 11. (원안과 같음)

춤 허용업소 지정(변경)신청서

(앞쪽)

신고번호	전수인	발급일	처리기간 : 5일
------	-----	-----	-----------

신고인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법인은 법인등록번호)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전화번호:
		휴대전화:

신고사항	명칭(상호):	일반음식점 신고번호:
	영업의 형태 : 춤 허용업소	
	영업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업장의 면적 :	㎡ 지상 층, 지하 층

변경 신고사항	변경전 : 변경후 :
------------	----------------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춤 허용업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마포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원본) 1부.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유흥주점(단란주점)에 준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 3.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4. 영업장 평면도(탁자, 의자, 세부 배치 평면도) 1부. 5.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운영계획서 1부.
-------------	---

210mm×297mm[백상지 80g/㎡]

신청 안내 및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